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의 과세가능성 연구*

신상이** · 전홍민***

<요 약>

가상화폐는 아직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지폐나 동전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나 전자화폐를 일컫는다. 최근 들어 가상화폐의 가격이 10배 이상 상승하여 가상화폐 거래는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7년 9월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거래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를 포괄하고 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자산으로 인식하는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거래세,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가상화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해서 국가별로, 일관된 결론은 없는 상황이다. 부가가치세 부과여부의 핵심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식할지 아니면 ‘통화’로 인식할지 여부이다.

한편, 한국에서의 가상화폐 거래는 단기간의 높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수행하려는 수요가 매우 강하고, 이는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러한 투기적 수요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매매차익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적 수요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문제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며, 세계 각국의 동향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요국의 과세현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한국에서의 과세가능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폐의 정의 및 특징과 더불어, 가상화폐의 과세와 관련된 세계의 동향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가상화폐의 과세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주제어〉 가상화폐, 비트코인, 과세가능성

* 본 연구는 2018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네트워크 재산세제 분과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이다.

**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박사과정, ssyend@naver.com, 주저자

***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hmchun@cbn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18년 9월 20일 게재확정일 2018년 10월 10일

I. 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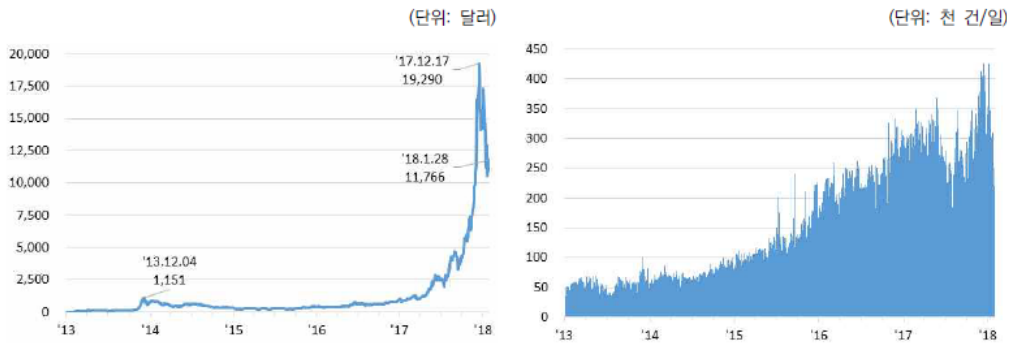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한국에서의 과세가능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상화폐는 아직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지폐나 동전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나 전자화폐를 일컫는다. 그 중 암호화폐는 가상화폐의 한 종류로써,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사이버 상에서 매매 혹은 결제를 하는 화폐를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암호화폐를 포괄하여 이를 가상화폐로 명기하기로 한다.

가상화폐가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로는 가상화폐의 가격이 2016년부터 2017년 말까지 10배 이상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가상화폐 중 시가총액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비트코인의 경우,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50배 이상 가격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7년 9월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거래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 증여세를 포괄하고 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자산으로 인식하는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해외의 국가들 예를 들어,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거래세, 상속, 증여세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가상화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해서 국가별로, 일관된 결론은 없는 상황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미부과하고 있는 상황이고, 독일과 싱가포르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다. 부가가치세 부과여부의 핵심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식할지 아니면 ‘통화’로 인식할지 여부이다.¹⁾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국세청인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는 2014년에 발표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관련 가이드스에서, 가상화폐를 자산(Asset)으로 인식하여, 금 혹은 은과 같은 실물자산처럼, 거래세,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즉 미국의 연방세법상으로는, 가상화폐를 금, 은과 같은 자산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교환 및 판매를 통한 이익에 대해서, 자본 이득세를 부과하되, 1년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반면 영국에서는 가상화폐를 통화로 인지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고, 거래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인세 및 소득세 규정에 따라, 과세를 하고 있다. 즉 영국의 경우 미국의 가상화폐 관련 과세를 기준으로 관련법을 제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1) 홍도현·김병일(2015)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대가를 송금할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공급받은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비트코인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기한 바 있다.

〈그림 1〉 비트코인 가격과 일일 거래횟수



출처 : 블록체인인포

일본도 2017년 4월부터 가상화폐를 공식적인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가상화폐의 및 보유 및 매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7월부터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독일은 2013년 은행법에서 가상화폐 자체를 금융자산으로 간주하여, 1년 미만으로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유럽사법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8년 2월 27일부터 가상화폐가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시에는, 이를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채굴 혹은 사적인 거래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호주는 2017년 7월부터 가상화폐의 화폐적 성격을 인정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개인이 가상화폐의 거래를 통해서 소득을 얻을 경우, 이를 기타수익으로 회계처리하게 하고, 과세표준에 대응하여, 15~5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즉 이러한 가상화폐에 대한 고세율의 논리로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실제로 거래자산으로의 성격이 보다 강하고, 해당 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즉 한국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세법상 과세 여부를 아직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세계의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와 분류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과세방향을 정립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상화폐를 교환거래의 수단인 화폐 자체라고 보기보다, 자산으로 인식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포괄적인 과세를 수행하기 어려운 이유는 크게 2가지이다. 첫 번째로, 가상화폐는 익명성을 근거로 하고 있고, 일반적인 화폐와 달리 중앙관리기구들에 의해, 거래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기 매우 어렵고, 과세당국이 익명적 세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추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즉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자체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여, 거래를 수행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과세를 위한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 그리고 이에 대한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한국의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만을 가지고,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할 수는 없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정립해야 할 것

이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에 대해서 중개인이 가상화폐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름을 포함한 거래정보를 상세히 과세관청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서 국채청이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과세소득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를 정확히 인식해야 하는데, 현재의 법상으로는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이 발생한 시기 혹은 수입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채굴한 시기로 수익을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채굴을 한 시기가 지나서, 실제로 이를 매매한 시기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지 여부도 여전히 불명확한 상황이다. 더불어 수익인식 기준으로 새로운 회계처리기준을 통해서,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경우 24시간을 기준으로 새로운 가격이 결정되고, 해당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의 변동성이 시간 단위별로 변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가격을 가지고, 매매차익을 계산할지가 향후 과세관청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문제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는 투기적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높은 규제를 기반으로 하여, 투기적 성격의 가상화폐 투자규모를 전체적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량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²⁾ 한국에서의 가상화폐 거래는 단기간의 높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수행하려는 수요가 매우 강하고, 이는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런 투기적 수요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매매차익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적 수요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제도가 투기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자 관련 세제 및 파생상품 등에 대한 세제라고 판단된다. 현재 한국에서는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부동산규제정책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2주택자, 3주택자 여부와 관련 없이,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본세율인 6%에서 40%의 세율을 적용하였지만,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된다면,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10%의 세율이 중과되고, 3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의 세율이 중과된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도 이처럼 투기지역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참고하여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파생상품 등의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뒷장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두 번째로, 가상화폐는 앞서 언급하였던 특유의 익명성으로 인해서,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³⁾ 돈세탁 등의 관련 범죄에 활용될 여지가 매우 크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의 과세자료

2) 한국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가상통화 거래액 121억 달러 중 한국의 거래액은 36억 달러로 약 30%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30대의 높은 참여도와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대한 낙관 전망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3) 구체적으로 2018년 3월 21일 이루어진, G20 회의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조세회피 및 자금세탁 혹은

제출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의 법률적인 구조 하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과세당국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법률이 전혀 없다. 따라서 향후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래소가 과세자료를 실명으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역시 가상화폐의 매수자 측면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자금에 대해서 일정 수준이상의 투자를 한다면 자금조달계획을 의무로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투기지역의 주택거래 3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즉 해당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가액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가상화폐에도 적용하여 약 3,000만원 이상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매수인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을 의무 제출토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도 태국에서는 가상화폐와 신규가상화폐공개와 관련하여, 가상화폐 거래상과 중개인, 대리인 등 모든 취급자가 관계 기간에 등록을 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고객알기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태국과 같은 등록제에 더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해당 자금을 투자하기 위한 출처를 소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식시장과 가상화폐시장은 근본적으로 시장의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된다. 주식시장의 경우, 기업공개(IPO)를 수행함으로써 인해서, 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해당 기업이 투자를 하여, 이익을 실현하면 이를 다시 주주에게 환원하는 배당정책을 통해서, 자금의 선 순환구조를 만들어 가는 반면에, 가상화폐의 경우, 화폐공개를 통해서 자금을 모집하고 있지만, 이를 기반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익을 실현할 경우, 주주에게 이를 재환원하는 배당을 실시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세제정책을 그대로 가상화폐시장에 적용할 경우, 오히려 이는 가상화폐 시장 그리고 가상화폐 투자자에게는 과도한 세제 혜택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과세를 고려할 때에는 물론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지만, 투기적 수요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의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를 실시하고, 관련된 해외의 과세를 정리하고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과세방안에 대해서 서술하고 결론의 순서로 서술을 실시하기로 한다.

II. 가상화폐의 정의

가상화폐 중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 중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며, 비트코인의 역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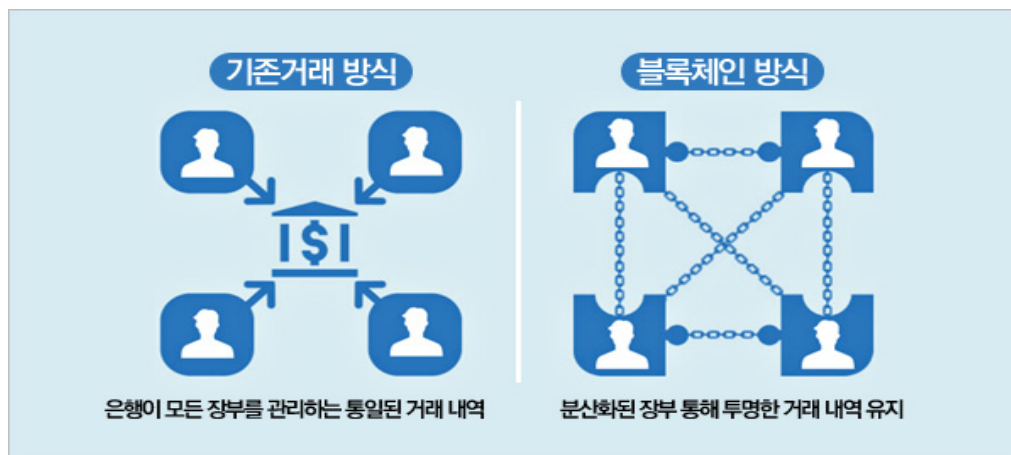
테러자금 조달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금융안전위원회 그리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와 공조하여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비트코인은 Nakamoto(2008)에 의해서 처음으로 개발되었고, 이는 개인과 개인간(Peer to Peer)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발된 바 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된 코드 형태로 존재하며, 실물로써의 가치는 전혀 없는 전형적인 명목 화폐(Fiat Money)이다. 어떠한 정부 혹은 기관도 비트코인 발행 및 운영과 관련이 없으며, 신뢰를 제공해주지도 않는다(전주용·여은정, 2014).

즉 인터넷에 접속을 하기만 하면, 개인과 개인간에 자유롭게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오픈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적인 암호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거래가 될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보안거래를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2>에서 자세히 나와 있지만, 기존거래 방식은 은행이 모든 장부를 관리하는 통일적인 장부방식인 반면, 블록체인 방식은 분산화된 장부를 통해서 거래 내역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비트코인이 이렇듯 활발하게 거래하게 된 근본 배경에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개입이 없이, 이중 혹은 위조 사용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동시에,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거래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비트코인은 최초 비트코인 블록을 생성한 이후, 현재까지 쌓인 비트코인 해시 함수⁴⁾를 풀어낸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전의 거래 기록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노동증명(proof of work)이라는 방식을 도입하여, 거래 유효성 확인 및 부정적인 거래 사용 방지를 수행한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모든 거래기록은 시스템 내의 모든 컴퓨터와 공유하기 때문에, 한 개인A가 부정한 거래를 시도할 경우, 시스템 내의 모든 컴퓨터의 과거 거래기록을 위조 혹은 변조를 해야 한다.

<그림 2> 기존거래 방식과 블록체인 거래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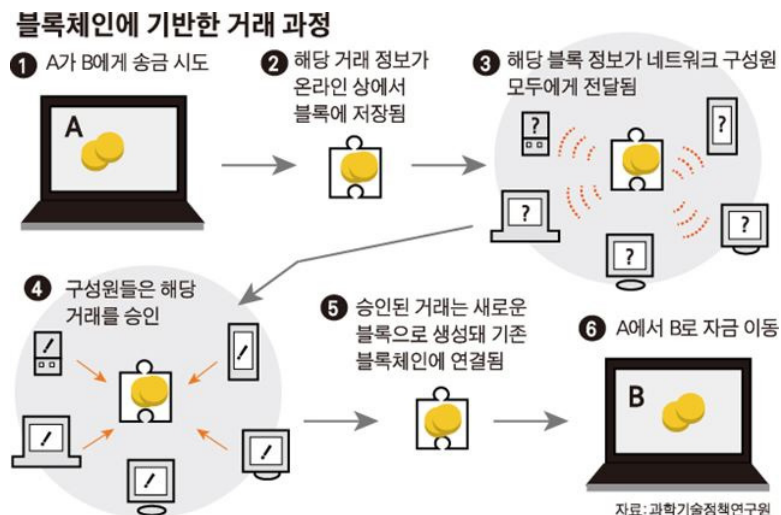
출처 : 구글

- 4) 채굴에 이용되는 컴퓨터는 암호화된 해시(Hash) 함수에 대해 계산할 수 있게 설정되어 있다. 암호화 해시함수는 입력 값으로부터 68 characters의 해시 값을 생성한다.

비트코인과 과거의 화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먼저 기존의 화폐의 경우 중앙은행이 화폐의 공급량을 조절하여 경제전체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만, 가상화폐는 중앙은행 혹은 중앙관리기구를 따로 두지 않아, 화폐량을 임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술적 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즉 암호화폐의 경우, 채굴이라 불리는 특수한 과정을 통해서 화폐의 공급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거래의 승인이라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화폐의 공급과 거래의 승인이라는 2가지 기능은 승인에 충분한 기여를 한 개인에게 일정량의 가상화폐를 보상의 의미로 부여하기 때문에, 기존의 화폐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거래의 익명성을 대표적인 비트코인 거래의 장점과 단점으로 동시에 언급하는데,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개인은 비트코인의 보유와 관련하여, 크게 공공키(Public Key)와 개인키(Private Key)를 생성하게 되고, 공공키는 일종의 금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 개인키는 이 금고에 대한 개인의 열쇠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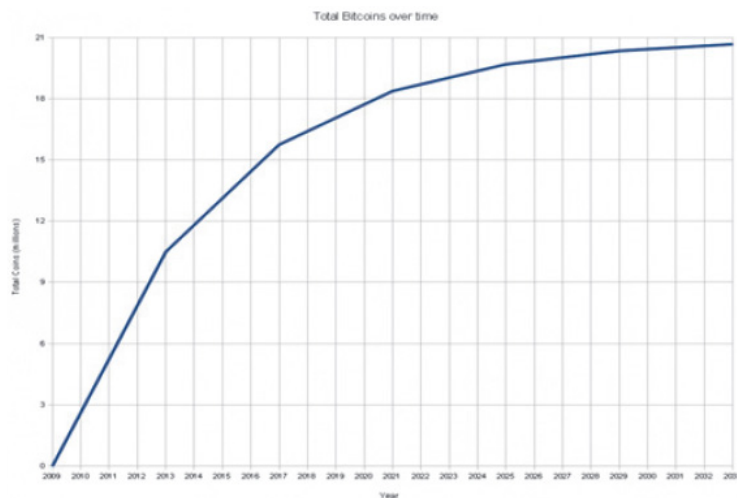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로, 가상화폐를 송금하는 거래의 경우, 구매자의 비트코인 공공키에서 판매자의 비트코인 공공키로, 비트코인이 이전되게 되고, 이러한 두 거래자의 공공키의 정보 및 이전의 결과를 분산화된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블록체인이라는 공공장부에 기록을 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런 블록체인의 공공키와 관련하여 이들의 개인적인 신상과는 연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성과 익명성이 동시에 보장되는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기술력이 있는 한 개인이 공공키를 원하는 만큼, 생성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공공키 정보만으로는 사용자를 식별하기 매우 어렵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거래과정은 아래의 <그림 3>에 보다 자세히 나와 있다.

〈그림 3〉 블록체인에 기반한 거래과정



가상화폐를 화폐의 대체재로 보기 힘들다는 데에는 다음의 3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화폐의 3대 기능은, 일반적 교환수단, 가치의 척도, 가치의 저장수단이다. 이 중에서 일반적 교환수단과 가치의 척도는 결국 상품을 매매하는 기능인데, 비트코인은 가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교환수단으로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사람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비트코인은 위에서 나오는 것처럼, 발행량이 한정적인 상황이고, 그 상한에 다가갈수록, 공급량이 감소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공급이 줄어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 가격이 상승한다고 판단한다면, 비트코인을 교환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고, 투자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가상화폐는 여전히 가격의 급등락 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교환수단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이가 대다수다. 마지막으로 가치의 저장수단으로도, 가상화폐는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장래에 지금의 비트코인 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본다. 즉 국채의 경우처럼, 국가가 가치를 유지시켜 주거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주식의 경우처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해당 자산에 대한 “본원적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대다수다.⁵⁾

〈그림 4〉 비트코인의 통화량 공급계획



자료 : 비트코인 위키

- 5)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일부 투자은행 보고서에서는 “2017년 12월에, 가상화폐는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탈중앙화 그리고 개인과 개인간의 네트워크 그리고 익명성을 추구하는 유저들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가상화폐의 “본원적 가치”를 측정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점이고, 이러한 점이 기존의 전통적인 채권 혹은 주식 자산과 가상화폐를 단순히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다.

특히 일부의 사람들은 가상화폐를 금과 비교하기도 하지만, 금은 가상화폐보다 다음과 같은 점이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금은 항상 수요가 있으며, 유동성이 매우 풍부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2008~2009년과 같은 세계 금융위기 때도, 금은 쉽게 매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상화폐는 금융위기 기간에 매매가 가능할 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외부 충격에 의한 급격한 가격 변동이, 화폐의 특성보다는 금 혹은 은 등과 같은 실물자산의 특성이라는 점에서, 향후 통화보다는 자산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과세가능성을 고려할 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더불어 화폐의 경우 유통이 잘 되어야 하는데, 비트코인의 약 70% 이상이 전혀 유통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비트코인은 현재까지 화폐로서의 성격보다는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해외의 과세 및 선행연구 정리

1. 가상화폐에 대한 해외의 과세 정리

가상화폐는 앞서 그 기술과 다른 자산과의 비교를 통해서, 가상화폐에 대한 가치측정이 매우 어려울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우선,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실질과세원칙과 ‘과세의 종류와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정주의를 양대 축으로 두 원칙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가상화폐의 경우 법률로써, 과세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상화폐를 통해서 막대한 차익이 발생하고 있어, 앞서 언급하였던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정주의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의 비트코인의 경우와 같이 가상화폐는 그 기술적 성격이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송금한다는 지급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가 기존의 ‘화폐’의 개념과 범주에 해당되지 않아서 개별 국가들마다 가상화폐의 성격을 달리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과세제도 또한 통일되지 않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화폐에 대해 별다른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각국의 주요 거래소들을 보면 외환거래에서의 금융기관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적 마련은 전 세계적인 관심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마련은 거래에 있어 지나친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가상화폐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결과이므로 가상화폐의 신뢰성에 기인하여 그 가치를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의 주요 국가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주요 국

가별 가상화폐 관련 과세제도는 아래 표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및 비과세 여부에 대해 법적 규제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글로벌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과세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표 1〉 주요 국가별 가상화폐 관련 과세제도

구 분	소득발생 시 또는 거래발생 시			비 고
	소득세·법인세	양도소득세 (자본이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미 국	○	○	× (통화로 간주)	
영 국	○	○	× (민간통화로 분류)	
호 주	○	○	× (판매세 부과하다, '17.7월부터 비과세)	
일 본	○	○	× (결제수단으로 취급)	
독 일	○	○	○ (물물교환으로 취급)	유럽사법법원 부가세 비과세 판결
싱가포르	○	-	○	자본이득세제 없음

출처 : 2018년 조세연구포럼 발제

가. 미국

미국에서는 가상화폐를 일반적인 통화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국세청(IRS)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취급하고 자산거래와 관련된 일반 규정들을 적용하고 있다.⁶⁾ 그러나 재화나 서비스의 대가로 가상화폐가 지급된 경우, 실질적인 화폐의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가상화폐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먼저 연방정부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해 주식과 마찬가지로 보유기간에 따라 단기차익과 장기차익으로 나누고 해당 차익에 대해서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주정부 세금은 주마다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세가 없는 주에서는 연방세만 내고 주세는 없게 된다. 한편 일한 대가로 돈 대신 가상화폐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간주된다. 비트코인을 받은 날의 공정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소득 금액을 계산해야 된다. 그러나 공정시장가치의 기준에 있어서 IRS는 가상화폐를 받은 날 거래소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향후 공정시장가치의 적용은 판례를 통해서 보충되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

6) IRS notice2014-21, 2014-16 I.R.B. 938.

상화폐 가격은 수시로 변하고 하루에도 큰 폭으로 변하는 때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에 있어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하드포크(hard fork)⁷⁾로 인해 공짜로 얻게 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이다. 비트코인의 예를 들자면, 비트코인에서 가지치기를 해서 생겨난 비트코인캐시(Bitcoin Cash)가 대표적인 하드포크의 사례일 것이다.⁸⁾ 그런데 하드포크로 공짜로 얻게 된 암호화폐도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인지에 대해 IRS의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고 해서 소득이 명백히 있는 상황 하에서, IRS가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표 2〉 주별 가상화폐 관련 물품판매세 기준

주(State)	공표 시기	유 형	자료 출처
캘리포니아	'14. 9월	무형자산	Publication 388 Tax information Bulletin
켄터키	'14. 6월	무형자산	Kentucky SalesTax Facts ,June 2014
미네소타	'14. 6월	현금	Sales Tax Fact Sheet No. 167
미주리	'14. 9월	무형자산	Letter Ruling No. LR 7411
뉴저지	'15. 3월	무형자산	TAM-2015-1
뉴욕	'14.12월	무형자산	TSB-M-14(5)C, (7)I, (17)S
워싱턴	—	무형자산	Accepting virtual currency as payment for goods or service
위스콘신	'14. 3월	무형자산	Wisconsin Sales and Use Tax Report No. 1-14

출처 : 신상화·강성훈, 가상화폐 이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비트코인을 중심으로 (2015.12.)에서 발췌

나. 영국

영국 세입관세청(HMRC)은 재화나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된 경우 가상화폐를 화폐가 아닌 상품권으로 취급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다가 2014년에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로부터 받은 소득과

7) 가상화폐에 대한 업그레이드 방식 중 보다 강력한 방식이 하드포크(hard fork)이다. 즉 기능 업데이트나, 잘못된 거래가 기록 될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체인을 두 갈래로 나누는 것이다. 기존 체인을 포크해서 업데이트 후, 업데이트 된 체인을 계속 쓰며, 보통은 기존의 체인은 버리지만 예외도 있다(ex.이더리움 클래식). 즉 하드포크는 이전버전과 호환이 안되며, 때문에 이전 버전의 암호화폐 블록체인 상에서 개발을 하고, 채굴을 하고, 대다수가 찬성을 하면 하드포크가 가능할 것이다.

8) 뉴스톱 “미국의 비트코인 세금, 그것이 알고 싶다”, 2018.01.31.

관련되어 이루어진 거래 및 관련 활동에 대한 세무상의 처리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⁹⁾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제공된 용역과 수취한 대가간 관련성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가상화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즉 비트코인 채굴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은 제공된 용역과 이로 인해 수취한 대가간의 관련성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목적을 위한 경제적인 활동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통화 간 교환활동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즉 가상통화의 경우에도, 세무상의 외환거래와 차입과 관련된 일반적인 규칙 등이 적용되어, 회사가 비트코인과 관련된 활동을 하여,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회계에 반영되고 정상적인 법인세 규정에 따라 과세될 것으로 보이며, 개인의 경우, 비트코인에 의한 이득이나 손실은 자본이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다. 일본

일본 정부는 2014년 가상통화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를 내놓았으며, 핵심적인 내용은 가상화폐는 통화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품으로 취급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중개 등 본업에서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거래에 수반되는 매매익은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이다.¹⁰⁾ 일본에서 가상화폐의 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비세법 등에 규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되어, 이에 따라 가상화폐의 판매와 거래는 미국과 달리 소비세 부과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7년 7월부터 가상화폐를 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켰다.¹¹⁾

라. 호주

호주 국세국(Australian Taxation Office : ATO)은 가상화폐 거래를 교환거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동일한 취급을 하고 있다.¹²⁾ 이는 가상화폐를 화폐나 통화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가상화폐는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 세무상의 교환거래와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된다. 재화나 서비스

9) Revenue and Customs Brief 9(2014) :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ies, 2014.3.3.(<https://www.gov.uk/194194and-customs-brief-9-2014-bitcoin-and-other-cryptocurrencies>).(접속일 : 2018년 4월 23일.)

10) 日本經濟新聞, 2014.3.7.

11) http://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17/seirei/index.html.(접속일 : 2018년 5월 1일) / 2018년 1월에 일본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체크에서 약 5700억원의 가상화폐가 해킹되어 유출된 바 있다. 이 사건 이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안유지가 더욱 더 중요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12) <https://www.ato.gov.au/business/gst/in-detail/your-industry/financial-services-and-insurance/gst-and-digital-currency/> (접속일 : 2018년 5월 5일)

공급의 대가로써 가상화폐를 수취하는 경우 가상화폐의 가치를 호주달러로 평가하고 경상소득(ordinary income)으로 인식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며, 공급된 재화나 서비스가 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면 GST(Goods and Service Tax)가 과세된다. 즉 수취한 가상화폐의 공정가치와 제공된 재화 또는 서비스의 대가의 차이는 소득세가 과세되며, 제공한 재화 또는 서비스가 GST의 과세대상이 되면, GST가 과세되었다. 호주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무형자산으로 취급되어 가상화폐를 구입 시 GST를 납부해야 하고, 가상화폐로 재화 및 서비스 공급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GST가 부과되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가상화폐 거래소가 다른 국가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결국 일본과 유사하게 2017년 7월부터 간접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켰다.¹³⁾

마. 독일

독일은 소득세제 측면에서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세제 측면에서는 영국과 정반대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가상화폐를 대가로 지불한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며, 가상화폐를 현실의 통화와 교환 거래하는 경우에도 기타용역을 제공한 거래가 되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유럽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의 Hedqvist Case(ECJ C-264/14 Judgment, 2015)에서는 가상화폐와 기존 화폐 간의 교환 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 대상인 통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¹⁴⁾ 따라서 독일의 가상화폐에 대한 부가가치세제는 결론적으로 영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바.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가상화폐는 GST 목적을 위해 ‘돈’, ‘통화’ 또는 ‘물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대신, 가상화폐의 공급은 GST 대상이 되는 서비스 공급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가상화폐를 사용하면 거래는 물물 교환 거래로 간주되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 업체와 공급업체에게 가상통화를 사용하는 공급업체가 있다면, 각 공급 업체에 대한 요금에 GST를 부과한다. 그러나 양해 각서로 게임 세계에서 가상 화폐 또는 가상 화폐를 사용하여 가상 화폐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실제 화폐, 상품 또는 서비스로 교환 할 때까지 GST를 청구하지 않는다. 가상화폐의 판매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고, 판매에 있어 거래 수

13) <https://www.ato.gov.au/general/new-legislation/in-detail/indirect-taxes/gst/gst---removing-the-double-taxation-of-digital-currency/>. (접속일 : 2018년 5월 17일)

14) <https://coinpedia.org/news/germanys-says-not-tax-bitcoin-purchases/> (According to the guidance, released Tuesday by the Ministry of Finance, Germany has said that they won't tax Bitcoin users for consuming the cryptocurrency as a means of Payment). (접속일 : 2018년 5월 17일)

수료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다. 가상 화폐로 지불된 물품 반입에 대해서도 실제 화폐를 사용하여 지불한 물품과 동일한 수입 GST 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싱가포르의 가상화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¹⁵⁾

2. 가상화폐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가상화폐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상화폐에 대해 전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내 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대한 세법 적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정승영(2015)은 세법상으로 가상화폐의 분류와 접근 방법에 대해 논의하면서 과세에 있어서 접근할 방향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으며,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홍도현과 김병일(2015)은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문제를 다루면서 우리나라에서 제기될 수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첫째, 거주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여 발생한 이득은 사업소득으로, 매각하는 경우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둘째, 가상통화 거래소 등 사업을 행하는 자도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며, 셋째, 사업자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함을 주장하였다. 넷째,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하는 경우 상속세 대상일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정승영(2016)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를 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만 분류 기준으로 단순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글로벌 시장과 사회의 추세에 맞춰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또한 가상화폐의 실제 유통되는 과정이 현금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현행의 제도적인 틀 내에서만 논의하지 않고, 금융법제도 체계 내에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Wiseman(2016)은 IRS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가상화폐의 거래가 주로 장기간의 투자 도구가 아닌 글로벌 거래를 위한 통화 및 운송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IRS는 기존의 조세원칙을 적용하기 보다는 가상화폐의 사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Chandrasekera(2018)은 가상화폐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함께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문제를 다루고 있다. IRS의 지침이 다소 부족할 지라도 IRS NOICE 2014-21은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 가상화폐가 세금 목적상으로는 재산으로 취급되며 가상화폐가 포함된 거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일반 세금 원칙의 적용을 받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세금과 관련한 가상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 먼저 가상화폐가 직원 보상으로 지급될 경우 가상화폐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직원 소득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회사 또한 원천징수를 해야 할 것

15) Singapore Inland Revenue Authority, “e-Commerce – Sale of Virtual Currency”, available at <http://me2.do/xFkUeHWu> (접속일 : 2018년 5월 20일) / 정승영(2016, p.65)

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가상화폐가 상품 대금을 지급하거나 한 종류의 가상화폐를 다른 대가로 교환 할 때에는 자산 교환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에 따라 손익을 인식 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해킹에 따른 개인의 도난 손실 인식과 관련한 문제와 경영 인센티브로 가상화폐를 부여할 경우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Adams, E. W. and Sumutka(2018)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다. 가상화폐는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어 가상화폐를 판매하거나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하는 경우 세금과 관련하여 과세대상 자본이득 또는 공제대상 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가상화폐가 구매에 따른 지불대가인 통화로 사용되어 지거나, 가상화폐 투자 및 지불대가 모두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그 성격을 규정하고 실제 세금을 지불하는데 따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직원의 보상으로 사용되거나 독립적인 계약자에 대한 대가로 가상화폐가 사용되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기타소득에 대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IV. 한국의 가상화폐 과세가능성 검토

1. 법인세

법인세의 경우 현행법으로도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과세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문제로 판단된다. 즉 법인세는 보통 순자산 증가를 곧 소득으로 파악하는 순자산증가설을 따르고 있다.¹⁶⁾ 법인이 가상화폐를 통해 소득을 실현하는 것만으로도 법인세 부과대상이 된다. 즉 예를 들어,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업체의 경우, 채굴소득 전체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거래소 수수료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경우 보유에 따른 평가손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주식의 경우와 같이 판단하게 된다면 평가손익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¹⁷⁾

한편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2017년도 매출액,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등을 2018년 3월말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전문가들이 추산하는 빗썸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2017년도 수수료수익은 약 3,1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를 통해 2017년도의 법인세를 추산해 보면 약 600억원 이상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¹⁸⁾

16) 법인세법 제 15조(이익의 범위) ① 이익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7)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의 규정은 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있다.

18) 한국경제 “가상화폐거래소에 최고 24.2% ‘과세’…국내 최대 빗썸 600억 넘게 납부할 듯”, 2018.01.22.

〈표 3〉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가능 세목 정리

가상화폐 과세 가능 세목 정리	
법인세	가상화폐 거래소 및 채굴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현행법상 과세 가능, 세율은 최고 24.2%
부가가치세	가상화폐 거래소 및 채굴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현행법상 과세 가능, 세율은 최고 10%
종합소득세	가상화폐 거래소 및 채굴 개인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특별법 제정 또는 소득세법 개정 필요
양도소득세	가상화폐 투자자 대상, 특별법 제정 또는 소득세법 개정 필요, 세율 10~40%
거래세	가상화폐 투자자 대상, 특별법 제정 또는 소득세법 개정 필요, 세율 0.2~0.3% 예상
상속, 증여세	현행법상 과세 가능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가상화폐를 화폐로 규정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 할 수 없지만 재화로 본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로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이중과세의 문제점과 가상화폐와 관련한 사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만약 한국의 과세관청이 가상화폐를 재화로 규정한다면, 현행법으로도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할 것이다.¹⁹⁾ 더불어 가상화폐 채굴업체는 채굴 후 판매가 되었을 경우, 거래소는 발생한 거래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을 것이다. 부가가치 세율은 현재 10% 이

19) 서면법규과-920(2014.08.25.)

[제 목]

거래용 가상화폐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요 지]

비트코인(Bitcoin)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920, 2014.08.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920, 2014.08.25

비트코인(Bitcoin)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다.20)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화폐로 규정하는 경우와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이중과세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가상화폐와 관련한 성장에 필요한 산업에는 구체적인 면세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종합소득세

소득세는 열거주의를 따르고 있어, 현행 소득세법상 열거 항목에 가상화폐를 포함할 항목이 없어 법 개정 없이는 과세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 종합소득의 열거항목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다.21) 가상화폐와 관련한 사업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먼저 사업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세법 제 19조에서는 사업소득과 관련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가상화폐 관련 사업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21항의 규정22)에 따라 사업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의 제공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게 된다면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세법 제20조23)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 열거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되어 있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가상화폐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귀속시기와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21조에는 기타소득에 대해 열거하고 있는데, 만약 가상화폐와 관련한 권리의 양도 및 대여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거나 계약에 따른 고용관계 없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2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열거된 기타소득의 규정을 적

20)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21)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22) 소득세법 제19조 21항 :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재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여·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기타소득의 규정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가상화폐와 관련한 소득에 대해 규정을 추가하고 시행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4. 양도소득세법 및 거래세

소득세법 상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부동산, 주식, 시설물이용권, 특정 파생상품 등을 열거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또한 마땅히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가상화폐의 경우, 가상적이고 인터넷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거래가격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에 해당한다 라는 부분이 대다수의 의견이다.²⁴⁾

현행법상 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하고, 이를 매도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최고 30%이다. 더불어 대주주 주식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다.²⁵⁾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내는 증권거래세율은 약 0.3%다.²⁶⁾ 따라서 주식보다 투기적인 성격이 강한 가상화폐의 성격상 주식보다 높은 거래세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주식의 경우 한국 경제에 있어,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써, 긍정적인 면이 많은 자산인 반면, 가상화폐의 경우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2017년에 행해진 대규모의 가상화폐에 대한 지나친 투기열풍을 고려해 볼 때, 거래세는 일단 주식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한국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을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다.²⁷⁾ 파생상품은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한국의 경우 파생상품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파생상품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파생상품 등의 거래 행위가 발생한 분부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특히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정상화를 위해서 파생상품의 거래,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기존의 5%에서 2018년 4월 1일부터 10%로 상향조정하였다.²⁸⁾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차익이 있는 모든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되고, 국내외의 파생상품의 손

24)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인터넷상의 장소가 존재하고, 매일 비트코인 가격이 공표되며 공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현금과의 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짐. 따라서 비트코인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신상화·강성훈, 92면).

25)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26)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27) 국민일보 “‘파생상품 양도세 방식’ 가상화폐 과세 검토”, 2018.01.22

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익을 합산해서, 전체적으로 이익이 난 경우에만 해당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소득이 2,000만원 그리고 해외 파생상품 양도손실이 1,000만원일 경우 순 금액인 1,000만원에 대해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가상화폐 특유의 투 기억제를 위해서는 파생상품 과세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상속, 증여세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²⁹⁾,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써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³⁰⁾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³¹⁾ 증여재산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 및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일컫는다.³²⁾ 이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도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에 관계없이, 현행법으로도 즉시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상속, 증여세의 경우 과세가액을 어떠한 가액으로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속, 증여세의 경우 공정가치가 있다면, 그 가액으로 하고, 공정가치가 없다면, 부동산이나 현금이나에 따라, 다른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다만 가상화폐의 경우 아직 가격이 안정화 되어 있지 못하고,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과거 3개월 간의 평균가를 해당 상속, 증여세의 가액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상속,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가상화폐의 경우 익명성이 여전히 보장되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이 많은 가구에서 편법으로 부를 이전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특히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자금출처를 분명히 소명하고, 현재 주택에 대해서 3억원 이상을 투기지역에서 구입할 때 작성하는 자금출처소명서를 의무로 작성하게 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7호

V. 한국의 가상화폐 과세 방안

지금까지 본 연구는 가상화폐에 대해 살펴보고 세계 각국의 가상화폐 과세 실태 및 선행연구 등을 살펴보았으며, 가상화폐에 대한 한국에서의 과세가능한 세목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본 절에서는 한국의 가상화폐 과세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가상화폐의 명확한 법적지위 필요

가상화폐의 정의가 쉽지 않은 첫 번째 이유로는 가상화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그 법적지위를 분명히 하지 않은데 있다. 가상화폐가 통화, 자산, 채화 등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과세되는 세목도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가상화폐의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는 통화로 간주되지 않는 추세이다. 즉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자산성격을 인정하여 소득 발생 시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통화 기능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비과세하는 경향이다. 가상화폐가 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교환의 매개수단, 계산단위 및 가치의 저장수단의 측면에서 가격의 변동성이 적고 광범위한 수용성을 내포해야 하지만 가상화폐는 그렇지 않다. 가상화폐는 가치 변동성이 크고,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 또한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상화폐는 알고리즘에 의해 사전 공급량이 정해져서 가격이 매우 불안정하여 이러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화폐는 적은 거래 비용으로도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가상화폐는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그 가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가치 저장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이처럼 가상화폐를 통화로 간주하기에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자산의 개념으로 정의내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가상화폐를 간접적으로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15일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관련 정부입장 발표를 통해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³³⁾ 또한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하여 몰수 대상으로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³⁴⁾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법적지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과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분명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은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33) 디지털데일리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위험성 알고서도 금융당국이 대응못한 이유는?”, 2018.06.21.

34) [비트코인의 몰수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고단2884판결(1심 판결) 및 수원지방법원 2017노7120(항소심 판결) [대법원 2018. 5. 30. 원심확정]

2. 현행 세법 개정

현재 한국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세계 3위³⁵⁾를 기록하는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량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과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부터 가상화폐의 과세가 추진되고 있고 정부는 올해 초부터 가상화폐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과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확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이미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가상화폐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지만 음지의 가상화폐를 법적제도로 양산화 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을 위한 정책마련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제도 마련을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세법상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과세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법인세법상 과세 이익은 예시규정으로 모든 이익에 대해서 과세가 가능하지만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 가상화폐와 관련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기에는 현행 소득세법의 체계상에는 보완이 필요하다. 양도소득세 역시 열거된 자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체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해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3. 과세를 위한 제도 마련

가.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4대 거래소로 불리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외에도 수많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존재하고 있다. 각 거래소 별로 가상화폐의 상장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등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족하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나 해킹 공격 등의 문제에 미흡한 거래소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강도 높은 수사가 잇다르고 있다. 이러한 수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후적인 방법이 아닌,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통한 법적제도 마련으로 사전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래소에 대한 잇다른 수사 및 처벌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를 주기 때문에 국내 가상화폐의 성장이 저해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35) <https://www.coinhills.com/ko/market/currency/>(접속일 ; 2018년 8월 27일)

〈표 4〉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수사일지

시기(2018년)	내 용
1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경찰 수사
2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해킹사건 관련 경찰 수사
3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 검찰 수사
4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 구속
5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검찰 수사

출처 : 파이낸셜뉴스 “투자자 보호 위한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시급”(접속일 : 2018.08.25.)

일본의 경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목적으로 가상통화교환업자를 대상으로 ‘가상통화법’을 제정하여 201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³⁶⁾ 본 법률안은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교환업자의 법적 지위 확립과 가상화폐 교환업자의 의무 규정 및 가상화폐 교환업자에 대한 감독 및 위반 시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의 주요 대상을 가상화폐 교환업자로 설정하여 교환업자에게 거래소 등록, 이용자에게 정보제공 등의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가상화폐 교환업자에 대해 정부 서류 및 보고서 작성과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 검사 업무의 개선 명령 등 감독 규정을 도입하였다. 일본의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도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5〉 일본의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교환업의 정의

가상화폐		가상화폐 교환업
정의	- 통화, 또는 통화표시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적으로 기록된 재산적 가치 - 상품·서비스의 대금결제, 법정통화 및 다른 가상통화와 상호교환 가능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전 가능	다음 중 하나를 업으로 행하는 서비스 : ① 가상통화와 본원통화·외환 교환(매매) 및 가상통화간 교환 ② 교환의 매개·중개·대리 ③ 상기 ①, ②의 행위에 대한 이용자의 금전 또는 가상통화 관리
특징	-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아님(즉 국가나 중앙은행에 의해 가치가 보장되지 않음).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결제·매매·교환이 가능한 결제수단	- P2P 및 거래소를 통한 거래뿐 아니라 가상통화간 교환업무도 포함 - 가상통화의 매개·중개·대리업도 해당 예) 가상통화 구입 권유나 가상통화 매매 브로커 등도 이에 포함 - ③에 의해 금전·가상통화 관리만을 업으로 행하는 사업은 해당되지 않다고 해석 가능(전자지갑 관리 등)

출처 : 안성배 등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의 정책 현황과 시사점”에서 발췌

36) 金融庁(2016.5.25), 「情報通信技術の進展等の環境変化に対応するための銀行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나.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과 거래자료 제출의무 부과

현재 한국에서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등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도입하여 가상화폐 거래 시 본인확인을 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서는 먼저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회원가입 후에는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조세회피를 방지 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열풍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가상화폐의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에 있어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는 과세를 위한 개별 거래 내역 확보에 있다. 거래 실명제가 이뤄져도 거래소에 기록되는 개별 거래 내역은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과세자료로서 한계가 있으며, 은행과 달리 가상화폐 거래소는 과세 목적으로 거래 내역을 정부에 제출할 의무도 없다.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³⁷⁾은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금융회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법정단체나 공공기관들이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인세법³⁸⁾ 및 소득세법³⁹⁾ 등에서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납

37) 제4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14.>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4.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6.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8)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39)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82조에서도 자본거래에 대한 명의변경 내용을 파악할 목적으로 증권사에 대해서도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변경내용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⁴⁰⁾ 가상화폐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이 된다면 이러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규정을 바탕으로 가상화폐 소득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국제공조

가상화폐는 국경을 넘나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국가별 독자적인 대응은 국가 사이의 규제 차익을 발생시키거나 투기수요가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한 과세제도를 마련하고 적용하는 등 국제간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한국에서의 과세가능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0) 제82조(지급명세 등의 제출) ③ 국내에서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社債), 채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다시 위탁하는 위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④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재산(受託財産) 중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구체적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페의 정의 및 특징과 더불어, 가상화폐의 과세와 관련된 세계의 동향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가상화폐의 과세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국내시장에서 가상화폐의 거래는 투기적 성격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블록체인의 기술 개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의 가격의 변화에만 관심이 있는 투기적인 성격에만 관심이 많다. 가상화폐가 향후 산업의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지나친 규제는 성장을 방해하고 세계의 추세에 뒤쳐질 수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금융위험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며, 과세와 관련한 규제는 중요한 방법이다.

현재 각국의 정부는 가상화폐를 통화로 인정하지 않으며, 통화라기보다는 자산으로 취급하여 자산이 교환되는 과정에서 얻는 가치에 대해서 과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가상화폐를 자산적 성격으로 간주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가상화폐에 과세가능한 세목으로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거래세, 상속 및 증여세 등이 적용가능할 것이다. 특히 가상화폐에 대해 투기성격이 강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으로 판단하여 과세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익명성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거래에 대해 과세당국이 거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세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또한 과세소득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를 정확히 인식해야하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가상화폐의 수익인식시기를 정확히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가상화폐를 투기성격이 강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으로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현행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가상화폐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에 정부는 가상화폐의 성격을 분명히 하여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와 정의를 분류하여야 할 것이며, 국세청은 가상화폐의 성격에 맞게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과세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상화폐가 전 세계의 유통망을 통해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과세제도 또한 각 국의 제도에 발맞추어 나가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신상화 · 강성훈. 2015. “가상화폐 이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안성배 · 권혁주 · 이정은 · 정재완 · 조고운 · 조동희. 2018.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의 정책 현황과 시사점”. KIEP오늘의 세계경제 제18권 제3호.
- 전주용 · 여은정. 2014. “비트코인의 이해 : 금융경제학적 관점에서”. *Korea Business Review* 제18권 제4호 : 211 – 240.
- 정승영. 2015. “가상화폐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 : 비트코인 사례를 중심으로”. 조세학술논집 제31권 : 85 – 140.
- 정승영. 2016. “가상화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조세학술논집 제32권 제1호 : 39 – 95.
- 홍도현 · 김병일. 2015.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문제—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제15권 제1호 : 113 – 144.
- Adams, E. W. and Sumutka, A. R. 2018. Documenting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Journal of Accountancy* 225 (1) : 8 – 10.
- Chandrasekera, S. 2018. Reality check : Virtual currency and its tax ramifications. *Chandrasekera. Tax Adviser* : 1 – 7.
-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13. Report to the Committee on Finance, U.S. Senate : VIRTUAL ECONOMIES AND CURRENCIES Additional IRS Guidance Could Reduce Tax Compliance Risks.
- Wiseman, S. A. 2016. PROPERTY OR CURRENCY? THE TAX DILEMMA BEHIND BITCOIN. *Utah Law Review*.

Study on Taxability of Virtual Money

(Ex : bit - coin)

Sang Yi Shin* · Hong Min Chun**

〈Abstract〉

Since the price of virtual money has risen more than ten times in recent years,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are attracting tremendous atten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taxation of virtual money in Korea.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s and prior studies of the global perspective related to the taxation of virtual money in addition to the defin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virtual money, and examined the taxation range of virtual currency in Korea.

Virtual currency trading in Korea is very demanding to make investments for the purpose of short-term high profit margins, which is very likely to have negative social effects.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is speculative demand, it is necessary to preemptively levy a high tax rate on trading gains and reduce the potential speculative demand.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is reviewing the taxation of virtual money from September 2017, which covers transaction tax, capital gains tax, value added tax, inheritance, and gift tax. In a country that recognizes virtual money as an asset, it is stipulated that taxation should be levied on the gains on sales related to virtual money.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policies are being made on virtual money, taxation on transfer income tax, transaction tax, inheritance, and gift tax. However, in the case of value added tax, there is no consistent conclusion regarding currency by country.

Current many governments generally do not recognize virtual currency as real currency, and it is a general trend that they need to be taxed on the value they receive as assets, rather than as currency. In order to actually tax the virtual money, the government must first classify the legal status and definition of the virtual currency by clarifying the nature of the virtual currency, and the tax office plans the taxation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virtual currency. Further, since virtual money is being traded through distribution networks around the world, the taxation system should also keep pace with the system of each country.

〈Key words〉 virtual money, bit - coin, taxability

* Ph.D. Student, School of Busines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syend@naver.com, First Author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mchun@cbnu.ac.kr,
Corresponding Author